

1. 개정이유

현재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명세서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제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익명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기타 서식에 대한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안 제21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 요건을 미충족해도 출원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청구범위를 제출할 때에 각 사항을 서식에 맞게 보정하도록 함.

나. 별도 파일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급 규정 마련(안 제120조의6)

명세서 형식 완화에 따라 명세서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지 않고 스캔파일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심사 또는 특허공

보 발행시 명세서 내용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필요시 이를 재전자화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를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다.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 121조)

현재 특허번호·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특허번호·출원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으나, 인터넷주소 등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및 모호한 표시 등의 처리기준이 부재하여 특허표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특허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하여 특허 표시방법의 기준을 마련토록 함.

라.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안 별지제23호서식)

현재 제3자의 정보제공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출서 서식 중 제출인 정보 부분은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정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0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17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화를 할 수 있다.

제1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변경신청서·철회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목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철회)서”를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철회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를 “서류반려요청서·반환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보정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정구분] 출원서 등 보정 출원서 등 보완 명세서 등 보정 임시 명세서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정정명세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충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1호의 정정명세서 등 보정란 다음에 임시 명세서 보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시 명세서 보정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	-----------------	--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출원서의 임시 명세서(청구범위 제출유예) 항목의 표시를 보정하는 것으로는 임시 명세서 제출 및 보정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임시 명세서 보정의 경우

(1) 임시 명세서의 보정은 전문(畵文)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정대상항목]란에 “전문보정”을 적고,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으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문(畵文) 보정된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별지로 작성하여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전문보정

[보정방법]별지와 같음

[보정내용]별지와 같음

(2) 임시 명세서 보정은 한 번만 가능하며, 임시 명세서 보정 이후 명세서를 다시 보정할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

속)신청서”를 “기간 연장신청서·기간 단축신청서·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절차 계속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 무효처분)신청서”를 “절차 수계신청서·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서·절차 무효처분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취하(포기)서”를 “취하서·포기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에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방관련 비밀출원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가목의 국방관련 비밀출원란 다음에 청구범위제출유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고,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는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제21조제6항
------------------	--	------------------------------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

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기여율]란은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1개인 경우에는 1/1로 적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별 기여율을 ○/□과 같이 분수로 적되,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당해년도연구기간(협약의 시작일과 협약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농촌진흥청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농촌진흥청

[연구사업명] 바이오장기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형질전환 복제무균돼지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개발

[기여율] 1/2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4. 1. ~ 2019. 3. 3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당단백질과 당지질말단당쇄변화에 기초한 간

암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통한 임상적용연구

[기여율] 1/2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2. 1. ~ 2019. 1. 31.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명세서 및 도면을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 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시 명세서 제출 시 주의사항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를 “증명신청서·접근코드부여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제목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를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제목 “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를 “결정보류신청서·심사유예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제출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출인]란

가. [제출인]란은 제출된 정보의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만들어 적으며, 익명으로 제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출 시에는 활용결과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인]란의 기재방법

(1)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라)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2)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가)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나)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가)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나) [주소]란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공통

(가)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가목 중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의견(답변, 소명)서”를 “의견서·답변서·소명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의9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내지 제28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목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를 “열람신청서·복사신청서·발급신청서·재발급신청서·정정발급신청서”로 하고, 뒤쪽 기재요령 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특허(등록)증 정정발급(전자문서) 및 재발급(전자문서)의 경우에는 특허로(www.patent.go.kr)의 「전자등록증 수신함」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제목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를 “특허취소신청서·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를 “심판사건 신청서·취소신청사건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제목 “심판(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를 “심판

절차중지 신청서·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Continuation of Box No. VII USE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REFERENCE TO THAT SEARCH란의 제2.3호 선택항목 본문 중 “CH,”를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기재요령 제2호가목 중 “12자”를 “25자”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 선조사 및 분류 결과의 이용란의 제2.3호 선택항목 본문 중 “CH,”를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기재요령 제2호가목 중 “12자”를 “25자”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Box No. IV BAS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란의 제4호 본문 중 “wishes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to start earlier than at”을 “requests to postpone the start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until”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기재요령 제2호 본문 중 “12자”를 “25자”로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제4기재란 국제예비심사의 기초란의 제4호 본문 중 “만료 전에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될”을 “만료시까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연기할”로, “희망”을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기재요령 제2호 본문 중 “12자”를 “25자”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제목 “조사·분류 전문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조사·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의 제목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특허권자 Patentee

발명자 Inventor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 인

서 명

CERTIFICATE OF PATENT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itle of the Invention

Patentee

Inven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特 許 証

特 許 第 号

出 願 番 号

出 願 日

登 録 日

発明の名称

特許權者

発明者

上の發明は「特許法」によって特許登録原簿に登録されたことを証明します。

特許庁長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 인

서 명

Patenturkunde

Patentnummer

Antragsnummer

Antragsdatum

Registrationsdatum

Bezeichnung der Erfindung

Patentinhaber

Erfinder

Hiermit wird bescheinigt, dass gemäß des [Patentgesetzes] das Patent auf das Register des koreanischen Amt für geistiges Eigentum eingetragen ist.

Patentamt, Korea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직인

Certificat de brevet

Numéro matricule

Numéro d'application

Date d'application

Date d'inscription

Dénomination d'invention

Propriétaire du droit de brevet

Inventeur

Certifie, selon la loi relative au brevetage et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que le brevet ci-dessus est inscrit dans le registre du bureau de la propriétaire intellectuelle de la Corée.

Directeur général de l'Office corée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ПАТЕНТ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Номер патента

Номер заявки

Дат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Дата регистрации

Название изобрет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Разработчик

Настоящим подтверждаю,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ое изобретени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Патентном Реестре согласно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а о патентах.

Начальник Патентного Бюро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CERTIFICADO DE PATENTE

N° de patente

N° de solicitud

Fecha de solicitud

N° de registraci3n

Título de la invenci3n

Titular de la patente

Inventor

Se certifica que la patente arriba mencionada ha sido registrada de acuerdo a la Ley de Patentes en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Director de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发明专利证书

发明专利 第 号

申请号 第 号

申请日期 年 月 日

登记日期 年 月 日

发明名称

发明专利权人

发明人

兹证明上述发明依照《发明专利法》已在发明专利登记原簿上予以注册。

韩国特许厅长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직인

شهادة حقوق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شهادة حقوق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كورية

رقم براءة الاختراع

رقم الطلب

تاريخ المأذ

تاريخ التسجيل

عنوان الاختراع

صاحب الاختراع

المخترع

هذا للشهادة بأن براءة الاختراع مسجلة لدى مكتب سجل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رئيس مكتب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등 록 제 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특허권자 Patentee

발명자 Inventor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등록사항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KIPO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CERTIFICATE OF PATENT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itle of the Invention

Paten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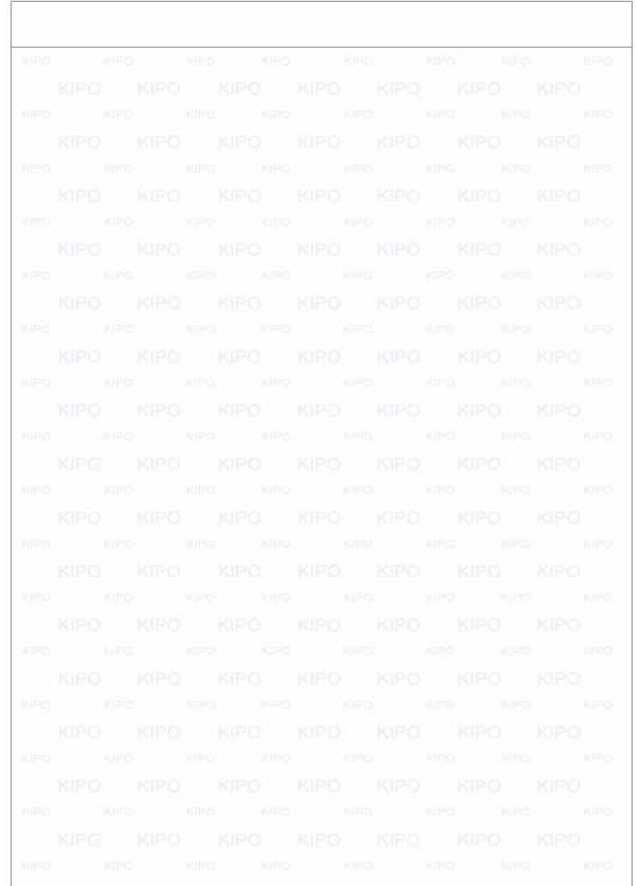
Inven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인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特 許 証

特 許 第 号

出 願 番 号
出 願 日
登 録 日

発明の名称

特許権者

発明者

上の発明は「特許法」によって特許登録原簿に登録されたことを証明します。

特許庁長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Patenturkunde

Patentnummer

Antragsnummer
Antragsdatum
Registrationsdatum

Bezeichnung der Erfindung

Bezeichnung der Erfindung

Erfinder

Hiernit wird bescheinigt, dass gemäß des [Patentgesetzes] das Patent auf das Register des koreanischen Amt für geistiges Eigentum eingetragen ist.

Patentamt, Korea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5서식]

Certificat de brevet

Numéro matricule

Numéro d'application
Date d'application
Date d'inscription

Dénomination d'invention

Propriétaire du droit de brev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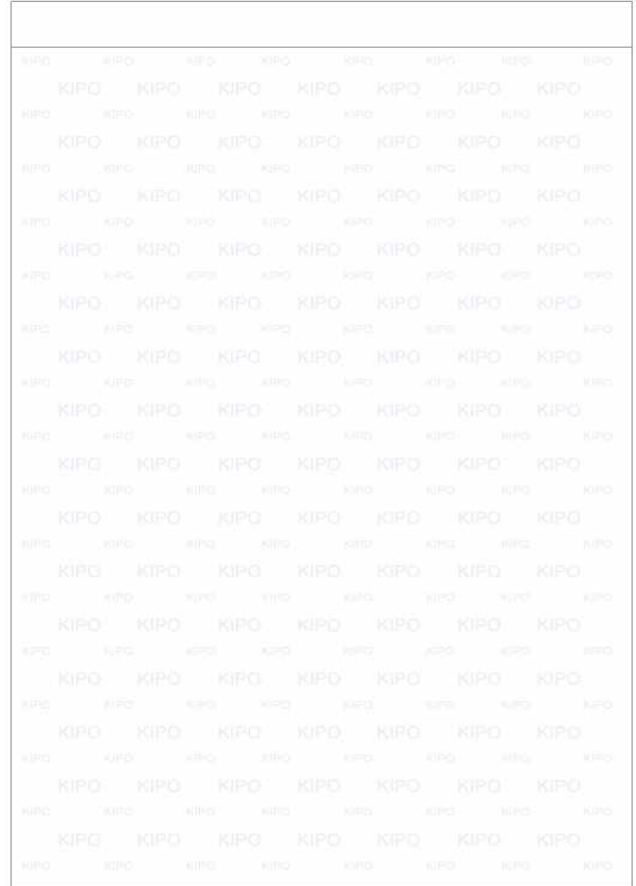
Inventeur

Certifie, selon la loi relative au brevetage et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que le brevet ci-dessus est inscrit dans le registre du bureau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 la Corée.

Directeur général de l'Office corée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6서식]

ПАТЕНТ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Номер патента

Номер заявки
Дат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Дата регистрации

Название изобрет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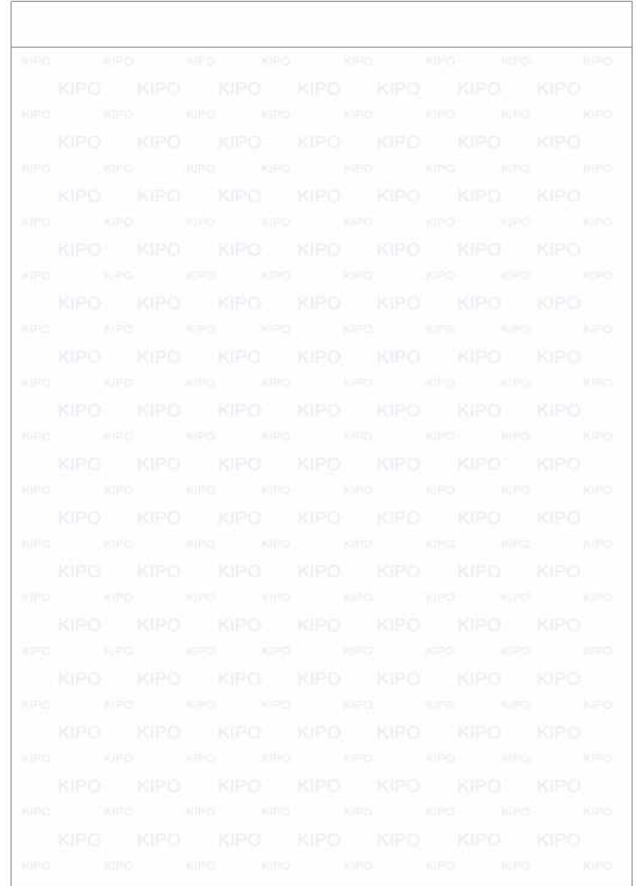
Разработчик

Настоящим подтверждаю,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ое изобретение з
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Патентном Реестре согласно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а о патентах.

Начальник Патентного Бюро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7서식]

CERTIFICADO DE PATENTE

N° de patente

N° de solicitud
 Fecha de solicitud
 N° de registraci3n

Título de la invenci3n

Titular de la pate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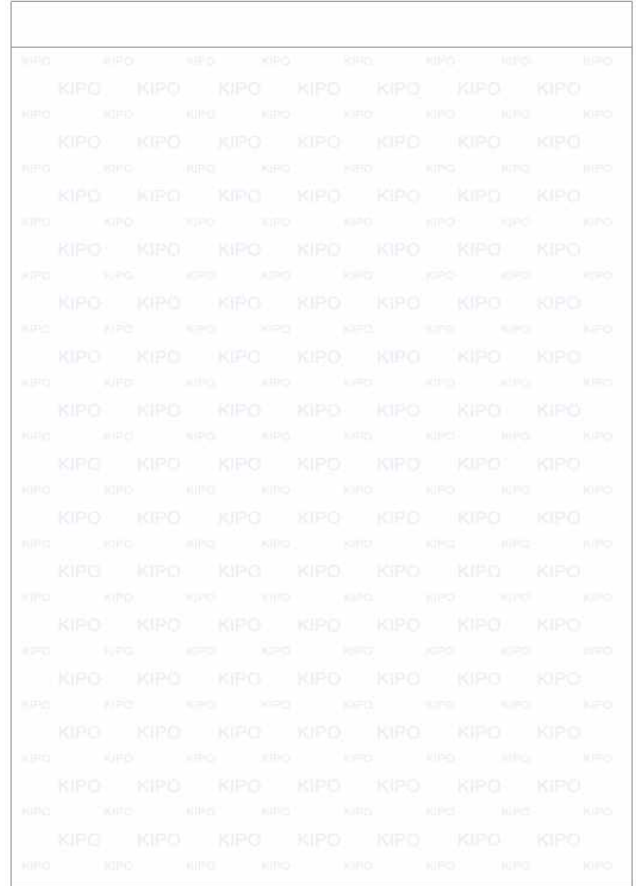
Inventor

Se certifica que la patente arriba mencionada ha sido registrada de acuerdo a la Ley de Patentes en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Director de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发明专利证书

发明专利 第 号
 申请号 第 号
 申请日期 年 月 日
 登记日期 年 月 日

发明名称

发明专利权人

发明人

兹证明上述发明依照《发明专利法》已在发明专利
 登记原簿上予以注册。

韩国特许厅长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9서식]

شهادة حقوق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شهادة حقوق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كورية

رقم براءة الاختراع
رقم الطلب
تاريخ المبدأ
تاريخ التسجيل

عنوان الاختراع

صاحب الاخترا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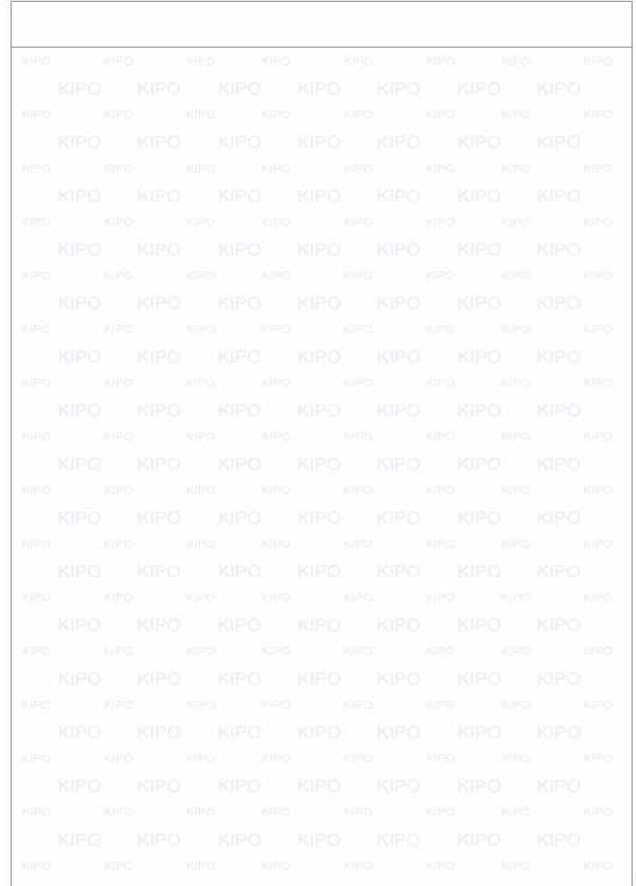
المخترع

هذا للشهادة بأن براءة الاختراع مسجلة لدى مكتب سجل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رئيس مكتب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²)

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 (생략)

<신설>

제121조(특허표시) (생략)

<신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1. 2.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17의2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화를 할 수 있다.

제121조(특허표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